

퇴직보험 약관

퇴직보험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약관 및 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하였을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단체 :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 동일 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

라.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

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가입 할 때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따라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매년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료 납입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을 체결할 때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제4조(퇴직보험 계약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의 퇴직보험 계약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재정안정화보험료 :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연금충실화보험료 : 연금급부를 충실화하여 노후생활에 대비하고자 하는 종업원을 위해 기업이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퇴직금관련 규정에 정한 퇴직금과 이 계약의 퇴직금부와의 差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피보험자 대표자]

- ① 피보험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대표하며 피보험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명의로써 계약 상 또는 계약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피보험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 2.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 ③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 피보험자 대표기관 및 피보험자 대표자 선정확인서"를 제출 받아 피보험자 대표자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또는 제4조(퇴직보험 계약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에 따른 협정서 작성 등이 필요할 때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조[퇴직보험 계약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퇴직보험 계약협정서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다음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계약에 관한 사항
 - 2.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 4. 예정사업비에 관한 사항
 - 5. 급부에 관한 사항
 - 6.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통지사항
 - 7. 협의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협정서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는 퇴직금관련규정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중 보험세목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서 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필요에 따라 장래의 기본보험료를 변경하고, 협정서를 정정하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여 드립니다.

제5조[목표적립비율의 결정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목표적립비율(퇴직급여제도를 퇴직보험제도로 이행할 때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재계산일에 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비율을 상향 또는 해당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금리연동형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여 결정합니다.

[공시이율]

회사가 장래 금리연동형의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공시기준이율]

회사의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산술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3년), 회사채수익률(무보증, 3년) 및 통화안정증권수익률(1년)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2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연동형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금리연동형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연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text{- 1년차 이자} = \frac{100\text{원}}{\text{원금}} \times 10\% = 10\text{원}$$

$$\text{- 2년차 이자} = \frac{(100\text{원} + 10\text{원})}{\text{원금}} \times 10\% = 11\text{원}$$

$$\rightarrow \text{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text{원} + 11\text{원} = 21\text{원}$$

-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com)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7조[급부의 산출 방법]

회사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해당 계약단체의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직전 보험료납입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필요사항의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미리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알림이 회사에 도달하지 않아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알림을 지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피보험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대표자를 통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 및 수급 예상액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⑤ 회사는 제3항, 제4항 및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4항의 경우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기타 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급부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7조(급부의 산출 방법)에서 정한 급부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급부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가 제7조(급부의 산출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부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급부 청구서(회사양식)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퇴직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급부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 중 그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급부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급부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일 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대표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급부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먼저 가지급 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해약환급금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직접 이전하며, 해약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단체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에게 계약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금리연동형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⑧ 회사는 제2회 이후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매년 첫번째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보험수익자에게 그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⑨ 해약환급금은 그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계산이율 + 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⑩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제6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말합니다)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12조[급부 받는 방법의 선택]

- ① 급부의 지급형태가 연금인 경우에는 연금수급권 취득일 이후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치기간이 지난 후로 합니다)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가 장래에 연금 지급을 위해 인수하는 연금재원은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보험수익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래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급부의 지급형태가 일시금인 경우에는 일시금 수급권 취득일 이후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 ⑥ 연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각 피보험자는 연금을 선택할 때(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치기간이 지난 후로 합니다) 그 적용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확정금리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수한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수한 연금재원을 각 연금지급시점의 연금원자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금지급시점까지 금리연동형의 준비금적립이율로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 ⑦ 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보증 지급기간 동안은 새로운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 ⑧ 연단위 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생존연금 지급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도 나눈 연단위 연금의 미지급분은 새로운 보험수익자에게 계속 지급합니다.
-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보험수익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라 선택한 일시금은 확정금리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금리연동형의 경우에는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금원자를 산출시점까지 금리연동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적립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⑪ 회사는 제1회 연금을 지급할 때에 그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증서를 드립니다.

제13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

계약자는 퇴직급부금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 징수의무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퇴직급부금을 지급할 때의 공제]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전환분 및 계약자가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피보험자명부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를 경유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퇴직급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퇴직급부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약관 및 퇴직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한 자 중에서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가입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적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전제로 피보험단체(보험대상 단체)에 추가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②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로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정상계약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추가가입을 중지합니다.

제20조[피보험자의 탈퇴]

- ①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합병·분사·관계사전출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 단체)로부터 탈퇴시킨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21조[보험계약의 승계]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관계사 전출 등 계약단체를 이동하는 경우 또는 계약단체의 분사 및 합병 등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등으로 동일한 계약(퇴직연금 포함)이 체결된 단체 사이에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과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 단체간 준비금 이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상속인을 포함합니다)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3조[임원계약의 특별취급]

- ① 임원계약의 피보험자(이하 “임원피보험자” 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피보험자중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임원으로 합니다.
- ② 임원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 및 과거근무채무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거치연금전환제의 특별취급]

피보험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공동계약]

이 보험의 계약은 계약자가 2개 이상의 취급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기관들 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이 보험의 특별계정은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리체계가 적용되나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합니다.
- ③ 이 보험에서 설정한 개별 특별계정자산의 종류는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자산(채권, 주식, 기타유가증권, 대출 등)의 종류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9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추가가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일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급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정한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을 특별히 협정서에 정한 경우,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은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의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른 다음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으로 합니다.

- ④ 추가가입자에 대한 기본보험료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료 납입주기가 비연납인 경우에 계약자는 당해 보험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의 잔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보험료는 납입주기에 따른 납입할 때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합니다.
- ⑥ 정기재계산일을 계약해당일이 아닌 다른 날로 협정서에서 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난 때(이하 “납입연체계약”이라 합니다)에는 해당 보험료 납입 전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납입연체계약에 대해 정상계약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납입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누어서 납입하는 경우, 해당 미납입보험료 등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상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상태로 2년을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⑤ 회사가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30조[보험료 등의 재계산]

- ①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정한 날)부터 매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을 재계산하며, 퇴직금 제도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퇴직금중간정산 등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을 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목표적립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금액을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계산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으로 계약자적립액이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등

제31조[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를 이유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할 경우
 - 2.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할 경우
 -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11조(급부 의 지급절차) 제3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 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급부 의 지급절차) 제6항에 따른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에서 협정서에 따른 계약 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금수급 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
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
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
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1조
(급부의 지급절차) 제10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
니다.

제32조[피보험자의 동의방법]

- ① 제17조(청약의 철회) 및 제31조(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
관(피보험자 중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
우 노동조합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의 노동조
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만 노사협의회 등을 말하
며 이하 "대표기관"이라 합니다)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노사협의회 동의는 노사협의회
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측 대표위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피보험자 동의에 대한 확인은 계약자가 회사에 제33조(청약철회, 해지 또는 계약이전 할 때의 구비서류) 제1항 제2호에 의한 " 피보험자(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대표기관)의 동의확인서(회사양식)"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3조[청약철회, 해지 또는 계약이전 할 때의 구비서류]

- ① 계약자가 제17조(청약의 철회)에 따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31조(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할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이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퇴직보험 청약철회(해지, 계약이전) 청구서(회사양식)
 - 2. 피보험자(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회사양식)
 - 3.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 4. 해약환급금(해지할 때) 수령대상 피보험자 명부(회사양식)
 - 5. 특별중도해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6. 이전 받을 회사의 피보험자 명부 사본(계약이전의 경우)
- ② 계약자가 제31조(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이전할 경우 등 해약환급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1조(급부의 지급절차) 제6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적립하되, 거치연금전환제 계약 및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9조[소멸시효]

급부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약환급금청구권 등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2022 년 4 월 1 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5 년 4 월 1 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급부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급부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결코(실수로도)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타당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퇴직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6조[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을 위한 증명서류 발급]

회사는 계약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의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퇴직보험의 적립비율, 피보험자의 근속기간 등 가입사실의 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47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드립니다.

퇴직보험 거치연금전환제특칙

제1조[특칙의 적용]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이하“거치연금전환제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료]

- ①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연금충실화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총퇴직금부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부와의 차이금액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제3조[운용방법의 선택]

각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확정금리형 또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급부의 지급]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급부지급액은 해당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거치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 ①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거치기간 중 연금지급이 개시되기전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된 부분의 거치원리금을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거치원리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각 피보험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6조[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